

#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

소관부서 : 도시과

제정 1997·3·1 조례 제 113호  
개정 1997·5·23 조례 제 202호  
개정 1998·10·14 조례 제 244호  
(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)  
일부개정 2023·8·14 조례 제1962호  
(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온천개발자문  
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온천법 시행령」 제11조에 따라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3·8·14>

**제2조(기능)**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 <개정 1997·5·23>

1. 온천의 채수계획
  2. 온천지구의 토지이용계획
  3. 온천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계획
  4. 온천관리계획
  5. 주변환경 정비계획
  6. 온천공 원상회복 방법등
  7.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수시 제출할 수 있다.

**제3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1997·5·23>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

다.

1.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  2. 온천발굴자(온천공소유자)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
  3. 관계공무원(국장급 이상)
  4. 지방의회의원 약간명
  5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④ 특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할 경우 필요시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⑤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는 시장은 당해 위원과 그 소속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5호 해당자는 2년
2. 제3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해당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
3. 제3조제4항 해당자는 특별한 사항의 조사심의 종료시까지

**제5조(위원장의직무)**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1997·5·23>

**제6조(회의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**제7조(간사)**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온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 <개정 1998·10·14>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③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수당과여비)**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

공무로 출장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3·8·14>

**제9조(운영규칙)**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7·5·23 조례 제20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8·10·14 조례 제244호,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 내지 제4조 생략**

부칙 <2023·8·14 조례 제1962호,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